

다시 뛰는
공정도시
서울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758호
2022. 1. 28.(금)



목 차

◆ 자치법규

[규 칙]

제4470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

자치법규

[규 칙]

◆ 서울특별시규칙 제4470호

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

2022년 1월 28일

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건전재정운영 평가기준 (제2조제2항 관련)

구분	평 가 항 목		평 가 지 표
재 정 건 전 성	통합재정수지비율		$\frac{\{수입 - (지출 + 순융자)\}}{(지출 + 순융자)} \times 100(\%)$
	통합유동부채비율		$\frac{\text{유동부채}}{\text{유동자산}} \times 100(\%)$
재 정 효 율 성	자체 수입 비율 (증감률)	지방세수입 비율	$\frac{\text{전년도 지방세수입 실제수납액}}{\text{전년도 세입결산액}} \times 100(\%)$
		지방세수입 증감률	$\frac{\text{전년도 지방세수입} - \text{전전년도 지방세수입}}{\text{전전년도 지방세수입}} \times 100(\%)$
		세외수입 비율	$\frac{\text{전년도 세외수입(경상세외수입 + 임시세외수입) 실제수납액}}{\text{전년도 세입결산액}} \times 100(\%)$
		세외수입 증감률	$\frac{\text{전년도 세외수입} - \text{전전년도 세외수입}}{\text{전전년도 세외수입}} \times 100(\%)$
	지방 보조금 비율 (증감률)	지방보조금 비율	$\frac{\text{지방보조금결산액}}{\text{세출결산액}} \times 100(\%)$
		지방보조금 증감률	$\frac{\text{전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} - \text{전전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}}{\text{전전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}} \times 100(\%)$ ※ 지방보조금 : 민간경상사업보조(307-02),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(307-03), 민간행사사업보조(307-04),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(307-10), 사회복지사업 보조(307-11), 민간자본사업보조-자체재원(402-01)
	출자· 출연· 전출금 비율 (증감률)	출자·출연·전출금 비율	$\frac{\text{출자·출연·전출금 결산액}}{\text{세출결산액}} \times 100(\%)$
		출자·출연·전출금 증감률	$\frac{(\text{전년도 출자·출연·전출금 결산액} - \text{전전년도 출자·출연·전출금 결산액})}{\text{전전년도 출자·출연·전출금 결산액}} \times 100(\%)$ ※ 출자·출연·전출금 : 출연금(306), 공사·공단 경상전출금(309-01), 공사공단자본전출금(404), 출자금(502),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(701-02),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(701-03)
	자체경비 비율 (증감률)	자체경비비율	$\frac{\text{자체경비 결산액}}{\text{자체세입 결산액}} \times 100(\%)$ ※ 자체경비 : 물건비(200) 중 일반운영비, 여비, 업무추진비, 의회비, 재료비 ※ 일반운영비(201) 중 공립대학운영비 제외 ※ 의회비(205) 중 의원국외여비, 의정운영공통경비, 의회운영업무추진비만 해당 ※ 업무추진비(203)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, 사책추진업무추진비만 해당
		자체경비비율 증감률	$\frac{\text{전년도 자체경비} - \text{전전년도 자체경비}}{\text{전전년도 자체경비}} \times 100(\%)$
재 정 계 획 성	세수오차비율		$\frac{\text{당초예산액} - \text{세입결산액}}{\text{세입결산액}} \times 50(\%)$ $\frac{\text{최종예산액} - \text{세입결산액}}{\text{세입결산액}} \times 50(\%)$
	이불응액비율		$\frac{\text{이불응액}}{\text{예산현액}} \times 100(\%)$

[별표 2]

측정단위별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 (제3조 관련)

(단위 : 원)

분 아	측정항목	측정단위	고정비용	단위비용
1. 일반공공행정	①지방의회비	지방의원수(명)	200,604,400	99,005,759
	②일반관리비	인구수(명)	21,190,683,000	9,033
		행정구역면적(km ²)		339,726,200
2. 공공질서 및 안전	③안전관리비	사업체종사자수(명)	610,057,000	11,422
		세대수(세대)		7,092
3. 교육	④교육지원비	학생수(명)	4,185,535,000	239,409
4. 문화및관광	⑤문화체육비	인구수(명)	9,000,729,000	23,879
5. 환경보호	⑥환경보호비	사업체종사자수(명)	3,403,033,000	38,608
		하수도연장(m)		58,275
6. 사회복지	⑦일반복지비	세대수(세대)	867,391,200	23,980
	⑧기초생활비	저소득취약계층(명)	404,797,600	404,339
	⑨보육사업비	영유아수(명)	2,193,735,000	991,851
		공공보육시설정원(명)		2,500,633
	⑩노인복지비	노인수(명)	6,702,098,000	267,845
	⑪아동복지비	아동청소년수(명)	1,519,965,000	32,480
7. 보건	⑫장애인복지비	등록장애인수(명)	4,666,699,000	197,363
		인구수(명)		12,137
8. 농림해양수산·산업·중소기업·과학기술	⑬산업경제비	사업체종사자수(명)	875,287,000	14,044
9. 수송 및 교통	⑭도로관리비	도로시설물연장(m)	3,709,841,000	409,478
		도로면적(m ²)		3,052
		미개설도로면적(m ²)		2,777
	⑮교통관리비	자동차대수(대)	53,738,300	11,243
10. 국토 및 지역개발	⑯지역개발비	도시계획면적(km ²)	1,567,323,000	161,668,900
		녹지대면적(m ²)		17,827
		하천연장(m)		287,243
11. 기타	⑰인건비	공무원수(명)	3,546,437,000	90,466,110

[별지서식]

조정교부금 산정 기초자료 대장 (제7조제2항 관련)

1.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: 명

2. 인 구 수

계	주민등록 인구수	외국인 등록수
명	명	명

3. 행정구역면적 : km^2

4. 학 생 수

계	초등학교	중학교	고등학교	특수학교
명	명	명	명	명

5. 사업체종사자수 : 명

6. 하 수 도 연 장

계	관 거	암 거	개 거	U형 측구
m	m	m	m	m

7. 세 대 수 : 세대

8. 저소득취약계층

계	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	차상위계층
명	명	명

9. 영유아수(0~5세) : 명

10. 공공보육시설정원 : 명

11. 노인수(65세 이상) : 명

12. 아동청소년수(6~24세) : 명

13. 등록장애인수 : 명

14. 도로시설물연장

계	교 량	고가차도	보도육교	지하보차도	일반터널
m	m	m	m	m	m

15. 도 로 면 적 : m^2 16. 미개설도로면적 : m^2

17. 자동차등록대수 : 대

18. 도시계획면적 : km^2

19. 녹지대면적

계	일반 녹지	분리대	수 벽	수림대	간이 휴게소	하천변조 경	지하철 환기구 주변	건물 주변	아파트 및 학교	친수 공간 조성	기타
m^2	m^2	m^2	m^2	m^2	m^2	m^2	m^2	m^2	m^2	m^2	m^2

20. 하 천 연 장 : m

21. 공 무 원 수

계	구 청	의 회	보건소	동주민센터
명	명	명	명	명

— 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 —

1. 개정이유

조례 개정('21.12.30. 시행)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측정단위를 조정하면서 고정·단위 비용을 재산정하여 자치구의 행정환경 및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일반조정교부금의 가산교부금액 배분을 위한 건전재정운영 평가기준을 개선함(별표 1).

나. 일반조정교부금 교부기준 중 기준재정수요액의 일부 측정단위를 조정하고, 고정·단위 비용을 재산정하여 반영함(별표 2).

다. 측정단위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조정교부금 산정 기초자료 대장을 개정함(별지서식).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